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3년 04월 29일
(월요일)

동북일보 4면

강북구의회 제169회 임시회 폐회

유군성 의원 "본인을 위한 조례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구의원은 구민을 위한 봉사자라고 생각하고 활동해야 하며 개인의 사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강북구의회(의장 박성열)는 지난 15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69회 임시회는 조례안건처리와 건의안 채택, 현정방문 의정활동으로 지난 22일 복지건설위원회는 송중동 채류장 현장과 미아동복합청사를 방문해 공사관계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행정보건의료위원회는 우이동 가마터 현장을 방문하는 등 지난 22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의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차녀 학자금 대여금 설치 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육외공공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 가결 통과되었으며, ▲201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13년도 행정보건의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1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이러 구본승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연구입대주택 입주 가족의 범위 변경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에 안건임지로 채택되었다.

◇ 뜨거운 갑자 중증장애인의 정황을 지원 조례 수정안 철회동의 표결결과 12:0 부결

박민수 의원 5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중증장애인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안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신체적 장애 등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의정



▲유군성 의원이 강북구의회 중증장애인 의정활동 지원조례 수정안 철회 동의를 위한 질의를 하고 있다.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권증진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였지만 조례안에서는 중증 장애의원을 1급부터 3급이라고 하고 있으나,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는 각종 법령마다 중증 장애를 장애등급에 따라 또는 중증 장애여부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달라 집행부와 운영위원회 간에 '중증'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와 활동보조 인력의 총원에 드는 예산문제로 의견이 나뉘며 운영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었지만 몇일만에 재상정되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어 뜨거운 갑자를 부수했던 조례안이 16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서 수정 의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나 4월 17일 발의자가 철회동의안을 제출하였지만 표결 결과 12:0으로 부결되고 결국 수정안이 통과됐다.

◇ 유군성 의원, 박민수 의원 수정안에 대한 뜨거운 질

이날 질의 답변에서 유군성 의원은 '인력보조 없이는 독자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려면 정말 필

요한 조례제정이라고 생각하지만 발의자 의원 본인이 이해를 받으려고 본 조례를 통과시키려는 것인지?' 묻고 '며월 전 장애인 30~40명이 강북구의회를 방문해서 이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그분들의 의회 방문이 자발적인지 누군가가 불러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1차 보류 2차 안건이 운영위원회서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 끝에 수정동의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철회하겠다는 사유가 무엇인지? 강북구 17,600명에 대한 장애인을 위한 조례라면 철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박민수 의원은 '이 조례는 본인만이 해당하는 조례가 아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7대 의회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다'는 답변에 유군성 의원은 '공무원이든 기간근로자를 쓰는 것이 아니다. 정말 독자적으로 활동하기 어렵다면 보조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동료의원 발의자는 3원 의원으로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함께 산도 다녔고, 비교사항, 해외

연수 등을 함께 해 왔다. 발의자 의원이 정말 인력보조를 꼭 받아야 하는지 인력보조 없이는 안 되는 것인지 물어보셨으며 또 7대 의회를 생각하면 철회보다는 수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북구에는 많은 장애인들이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고 이중 지체장애 3급 39명이 공공근로로 일하고 있으며 17,600명의 강북구 장애인들 중 어떤 장애인도 내년에 의회에 들어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보조인력이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서라도 운영위원회서 2차까지 심도 있는 회의를 통해 올랐던 수정안이 철회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본인을 위한 조례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 구의원은 구민을 위한 봉사자라고 생각하고 활동해야 하며 구의원 개인의 사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재가를 밝혔다.

제차 답변에 나선 박 의원은 '정각 장애 있다고 의정활동 못하는 것이 아니며 보조인이 없다고 의정활동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좀 더 원활한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더하기 위함이며 오늘 철회하려는 이유는 좀 더 같이 논의해 보자는 뜻에서 철회하려는 것'이라는 답변으로 마무리했다.

정회 후 가진 표결에는 재적의원 12명 철회 반대 12표로 철회동의안이 부결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중증장애인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수정안이 처리됐다.

한편 이번 169회 임시회는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에 강남연 의원, 안부래 전직공무원, 정경영 공인회계사, 이석민 권진수 세무사를 선임하였으며, 이중 강남연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최동수 기자 cds0012000@haramail.net)

서울포스트 4면

강북구의회 제169회 임시회 폐회

사심 담긴 조례안 강북구의원 한마음으로 '안 돼!'



유군성 의원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중증장애인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강북구의회(의장 박성열)는 지난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69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중증장애인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이 표결 결과 12:0으로 부결되고 결국 수정안이 통과됐다.

조례안은 지난 3월 21일 박민수 의원의 5명의 의원들이 발의해 168회 임시회 후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서 보류, 16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서 수정 의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나 4월 17일 발의자가 철회동의안을 제출한 안건이다.

이날 질의 답변 시간에 유군성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의정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인력보조 없이는 독자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려면 정말 필요한 조례 제정이라고 생각하지만 발의자 의원 본인이 이해를 받으려고 본 조례를 통과시키려는 것인지?" 묻고 "며월 전 장애인 30~40명이 강북구의회

를 방문해서 이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그분들의 의회 방문이 자발적인지 누군가가 불러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1차 보류 2차 안건이 운영위원회서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 끝에 수정동의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철회하겠다는 사유가 무엇인지? 강북구 17,600명에 대한 장애인을 위한 조례라면 철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박민수 의원은 "이 조례는 본인만이 해당하는 조례가 아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7대 의회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다."는 질의와는 동떨어진 답변을 했고 또 다시 질의에 나선 유군성 의원은 "공무원이든 기간근로자를 쓰는 것이 아니다."며 "정말 독자적으로 활동하기 어렵다면 보조인력이 필요한 것이다. 동료의원 발의자는 3원 의원으로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 함께 산도 다녔고, 비교사항, 해외연수 등을 함께 해 왔다. 발의자 의원이 정말 인력보조를 꼭 받아야 하는지 인력보조 없이는 안 되는 것인지 7대 의회를 생각한다면

철회가 되어서는 안 되며 수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강북구에는 많은 장애인들이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고 이중 지체장애 3급 39명이 공공근로로 일하고 있으며 17,600명의 강북구 장애인들 중 어떤 장애인도 내년에 의회에 들어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보조인력이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서라도 운영위원회서 2차까지 심도 있는 회의를 통해 올랐던 수정안이 철회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본인을 위한 조례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 구의원은 구민을 위한 봉사자라고 생각하고 활동해야 하며 구의원 개인의 사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재가를 밝혔다.

또 다시 답변에 나선 박민수 의원은 "정각 장애 있다고 의정활동 못하는 것이 아니며 보조인이 없다고 의정활동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좀 더 원활한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더하기 위함이며 오늘 철회하려는 이유는 좀 더 같이 논의해 보자는 뜻에서 철회하려는 것"이라는 답변으로 마무리했다.

정회 후 가진 표결에는 재적의원 12명 철회 반대 12표로 철회동의안이 부결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중증장애인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수정안이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는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에 강남연 의원, 안부래 전직공무원, 정경영 공인회계사, 이석민 권진수 세무사를 선임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차녀 장학금 등을 의결하였다. 또 현정방문 의정활동으로 지난 22일 복지건설위원회는 송중동 채류장 현장과 미아동복합청사도 둘러보고 현장 공사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들었고 행정보건의료위원회는 우이동 가마터 현장을 방문했다.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조례 ‘논란’

강북구의회, 제안자 철회요청 부결시키고 수정동의안 통과시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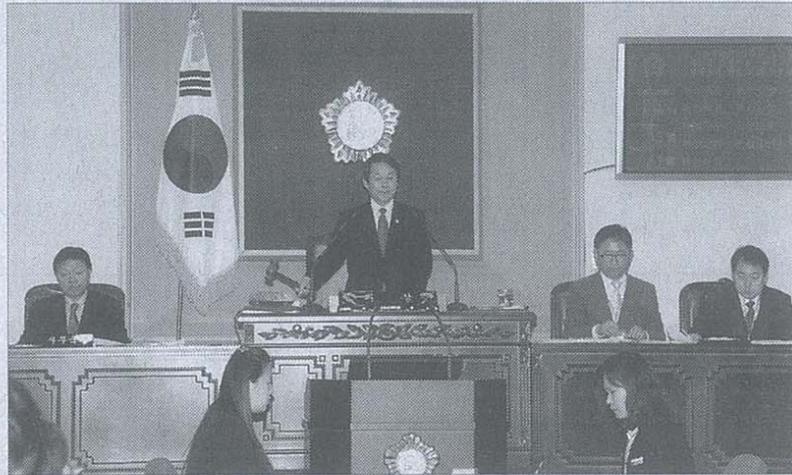
강북구의회 제169회 임시회가 지난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5일부터 열린 것으로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별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을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자료요구 협의의 건 등을 상정 처리하며 조례안 심의에 나섰고 위원회별로 현장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특히 23일 마지막본회의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강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조례’가 철회동의의 건까지 상정돼 표결 끝에 부결시키고 운영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 내용을 가결시키는 등 논란을 거듭했다.

이 조례는 안전상정을 위한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문수) 심사에서 장애의원인 박문수 의원의 발의로 최선 의원이 제안설명에 나섰으나 장애의원의 구분 정도와 보조근무자 채용문제 2차 위원회 회의까지 열며 ‘의정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과 ‘사무국장이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의 내용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상정했던 안건이다. 그러나 발의자인 박문수 의원이 본회의에 철회동의를 냈고 이 안건은 결국 운영위 수정동의안이 가결된 것이다.

이날 유균성 의원은 “운영위에서 2차까지 심도있게 심의해 본회의에 올리려던 조례안이 갑자기 철회하려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밝혀달라”며 “발의자 의원이 내가 꼭 이 혜택을 받아야 조례를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면 전체 장애인을 생각해 보면 절대 철회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철회동



강북구의회 제169회 임시회가 지난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사진은 본회의 장면.



유균성 의원



박문수 의원

의에 이의를 제기해 표결로 몰아갔다.

유 의원은 “3선의 동료의원은 함께 산에 오르고 비교시찰 해외연수도 다녀와 이 시점에서 인력보조를 꼭 받아야 하는 건지, 본인을 위한 조례제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며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의원 개인의 사심을 가져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문수 의원은 “수정안의 내용중 대상의원의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고 장애의원의 추천으로 인력보조를 받아야 하는 내용이 배제돼 철회하려 했던 것”이라며 “이 조례는 나만 해당되는 조례가 아니고 7대 의회에서 장애의원이 나올 수 있어 좀 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철회해야 한다는 게 제안자의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결국 이 조례의 철회동의를 표결에서 12명의 의원이 참여해 전원이 반대해 부결됐고, 운영위원회 수정안이 재상정돼 통과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강남연 의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려는 안건을 놓고 표결에 나서 가결시키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